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미흡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위탁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고, 영유아 2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공동활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의무 배치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식중독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급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함

또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 폐지·휴지 사실을 교직원·보호자에게 신고서 등 서류 제출 이전으로 명확하게 하고, 제출 서류에 어린이집이 교직원·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7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하로 미흡한 경우

제33조제2항, 제5항 중 “전염성 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를 “그 사실을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등 제출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에 따라 폐지·휴지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별표 8 제3호나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2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원장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 다목2)의 위반행위 중 “제3호가목2)아)”를 “제3호가목3)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제24조제7항”을 “제24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에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1호라목과 [별표 8] 제3호나목 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8] 제3호나목 8)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9호 개정 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u> 6. ~ 11. (생략) ② ~ ⑦ (생략)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 7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현행	개정안
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8. (생략) <u><신설></u>	의 취소)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하로 미흡한 경우</u>
제33조(건강진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u>전염성 질환</u>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33조(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감염성 질환</u>-----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현행	개정안
<u>전염성 질환</u>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u>전염성 질환</u>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생략)	<u>감염성 질환</u> ----- ----- -----, <u>감염성 질환</u>----- ----- -----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①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u>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u> 1. ~ 4. (생략) <u><신설></u> ② (생략)	-----, <u>그 사실을 폐지·휴지·재개 신 고서 등 제출 전까지 보육교직 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 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에 따라 폐지·휴지사 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u>증빙할 수 있는 자료</u> ② (현행과 같음)